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